

영등포구의회  
제200회 임시회

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』

# 檢 討 報 告 書

【영등포구청장 제출】



2017. 5. 16.

社 會 建 設 委 員 會  
專 門 委 員

#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## 檢 討 報 告

### 1. 경 과

의안 제222호로 2017년 5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 
5월 1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.

### 2. 제안이유

우리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지역 효행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 
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복지카드인 “백세카드” 사업의 근거를  
확보하여 사업운영을 활성화 하고자 함.

### 3. 주요내용

어르신 복지카드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(안 제8조)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련근거 : 「노인복지법」 제26조(경로우대)

나. 예산조치 : 별도 조치 필요 없음.

다. 입법예고 (2017. 3. 16. ~ 4. 5.) : 의견 없음.

## 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구 어르신들에게 경로우대와 실효성 있는 노인복지를 실현을 위해 시행 중인 어르신복지카드제 운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임.
- 주요 개정 내용은  
안 제8조를 신설, 지역효행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어르신 복지카드제를 운영하고 참여업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며, 참여한 업소에 대하여 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.
- 현 사회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어르신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, 어르신들의 복지욕구도 또한 다양화 되고 있으나 현실은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미흡한 실정임.

- 현재 우리구에서는 2017년 1월부터 어르신 복지카드인 “백세카드”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, 2017년 4월을 기준하여 8,704개의 카드를 발행하였으며, 음식점, 이·미용시설, 안경점 등 관내 총 446개 업소에서 참여하고 있음.
  
- 어르신들에 대한 경로우대 및 지역 효행문화 장려를 위하여 “백세카드” 운영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며, 또한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업체에 대한 적절한 지원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  
-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어르신 공경의식을 고취시키고 노인 복지를 증진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이며, 현재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사항으로 조례안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## 관 련 법 령

### ■ 『노인복지법』

**제26조(경로우대)**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[대통령령](#)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·능원·박물관·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.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.

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.